

괴정2동 변전소 설치장소 이전에 따른 청원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접수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17 -- 괴정2동 188-9. 변전소 설치반대
투쟁위원장 기길남(소개의원 : 강정순의원)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9. 17

다. 상 정 일 자 : 1998. 9. 25(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, 채택)

2. 취지설명 요지(소개의원 : 강정순 의원)

- 괴정2동 175-1번지상에 해주종합건설(주)이 스포렉스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을 한전에 분양 154kW 대형변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수차례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반대진정을 한사함이며
- 토지소유자가 당초 상가부지에 아파트 건립 약속을 이행치아니하고 한전에 분양 대형변전소를 설치케 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고
- 변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부근지역 주택 및 지가하락과 어린이들의 전자파 유해 문제는 국내외 연구발표자료에 의하면 심각한 실정이므로 변전소 설치 부지를 괴정동 산25-3번지로 이전설치를 요망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야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한전에서는 2002년도 공급율에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 설치 불가피하며 지하 변전소내 구조는 전기 연결부분은 금속관내 불연성 재료로 밀폐되며, 전기기기 및 송배전선로는 지하에 설치되어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
- 또한 현 부지가 지하철 통과로 인한 주거시설설치 불가능 사유로 변전소 설치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괴정2동 산25-3번지 대체부지는 용벽설치 불가능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

- 한전측의 주장은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미흡하며 국내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60m이내 주택은 안전하지 못하며, 30~60m이내 지역은 학교나 탁아소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
- 현 부지 변전소 설치계획은 부근지역 지가하락, 전자파 피해등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인 괴정2동 산25-3번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(이상은 위원)

-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의회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동의 제의

6. 심사결과

- 청원인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의회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결정

붙임 : 청원의견서 1부. 끝.

청 원 의 건 서

■ 청원건명 : 괴정2동 175-1번지. 대형변전소 설치이전 요구청원

■ 청 원 인 : 괴정2동 188-9번지. 변전소 설치반대투쟁 위원장 기길남

■ 소개의원 및 소개년월일 : 강정순 의원('98. 9. 17)

■ 청원요지

- 괴정2동 175-1번지(괴정2동 대티터널앞 골프연습장)에 토지소유자가 지하4층 지상6층의 건축물을 신축 지하2~4층을 154kW 대형변전소 용도로 분양할 계획임
- 당초 토지소유자는 상기부지상에 아파트 건립약속을 이기고 평당3백만원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면치못하고 이로인하여 인접 부지는 변전소 설치계획에 의하여 주변주택 및 토지가격이 하락되며
- 국내 연구발표자료에 의하면 고압선 전자파는 변전소 설치부지로부터 60m내외 주택은 안전하지 못하며 미국 LA의 경우에도 30~60m이 내지역은 학교, 탁아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
- 변전소 설치부지를 현위치에서 괴정동 산25-3번지(괴정2동사무소 하부)로 이전 설치할 것을 요망하는 사항임.

■ 의견내용

- 변전소를 설치함으로서 인근지역 주택 및 지가하락등의 직접적인 요인일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전자파 유해문제는 국내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심각한 실정으로 사료되어
- 변전소 설치부지를 괴정동 산25-3번지(대티고개 진입로 괴정2동사무소 하부)로 이전설치를 요망하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구의회 의견서를 채택합니다.

1998. 10.

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산업위원회